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12. 16) 상정
- 제16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12. 16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윤 인 상)

□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9432호, 2009. 2. 6. 공포, 2009. 9. 8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 번호를 정비하고, 식품진흥기금 중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도록 하는 한편,
- 부패영향평가 결과,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어 연임에 따른 특혜발생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식품위생법」 제65조를 제82조로 하고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

도록 추가함(안 제6조제2항).

나.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개정함(안 제8조제5항).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속기록 참고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특이사항 없음	○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「식품위생법」 제65조”를 “「식품위생법」 제82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”로 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